

보 상 계 획 공 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1972-89호(1972.07.06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75-98호(1975.07.04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하고, 서울특별시 강북구공고 제2020-419호(2020.04.09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작성 고시를 위해 열람공고 하고, 강북구고시 제2020-81호(2020.05.28.)로 실시계획 고시된 **“삼양로88가길 3~삼양로 366 도로개설공사”**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하오니,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의 명칭: 삼양로88가길 3~삼양로 366 도로개설공사
- 나. 사업 시행지: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88가길 3~삼양로 366
- 다. 사업 시행자: 강북구청장(도로관리과 ☎ 02-901-5836)
 - ※ 보상관련 업무는 건설관리과 보상팀에 문의(☎ 02-901-5813)
- 라. 사업기간: 실시계획작성 고시일로부터 2년

2. 열람 및 이의신청

- 가. 열람기간: 2020. 7. 13. ~ 2020. 7. 29. (09:00~18:00)
- 나.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: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9길 14(미아동)
 - 미아동북합청사 3층 도로관리과(☎ 02-901-5836)
 - 미아동북합청사 4층 건설관리과(☎ 02-901-5813)
- 다. 열람대상: 위 사업에 편입되는 소유자 및 관계인
 - ※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목록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열람 장소에 비치
- 라. 열람방법: 신분증 및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 포함) 지참 방문
- 마. 이의신청방법: 서면제출

3. 보상계획

- 가. 보상시기: 2020년 12월 이후(예정) 손실보상협의서 개별 통지
- 나. 보상방법: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보상금 지급
- 다. 보상금 산정방법: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
 - ※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사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.

4. 조서상의 내용(공부와의 상이, 항공사진 판독 등에 따라)은 변동될 수 있으며, 편입물건 등은 보상협의 통지 시에 확정됨

5.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, 송달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
2020년 7월 13일
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
